

[노사합의서]

부천도시공사(이하 “공사” 라 한다)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부천도시공사노동조합(이하 “노동조합” 이라 한다)은 2025년도 3분기 노사한마음협의회(2025. 9. 30.)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

1. 단체협약 제40조(통상임금)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<단체협약 제40조(통상임금)>

① 공사의 통상임금 산정 항목은 다음과 같다.

구 분	통상임금 산정항목
항 목	기본급, 운영수당, 직급보조비, 정액급식비, 운전수당, 기술수당, 장기근속수당, 장기근속가산금, 안전수당, 안전관리수당, 위생수당, 특정업무수행경비, 위험근무수당, 생활임금, 명절휴가비, 자체평가급 최소지급액(75%), 업무대행수당

② 삭제<2017.11.16.>

③ 변경된 통상임금은 2024. 12. 19. 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

2.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

① 공사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·운영한다.

②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 비율, 운영 방법 등 세부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구성하여 정한다.

2025. 9. 30.

부천도시공사노동조합

위 원 장 이 수 창

서명 이 수 창

부 천 도 시 공 사

사 장 원 명 희

서명 원 명 희